

아동·청소년
성폭력 대응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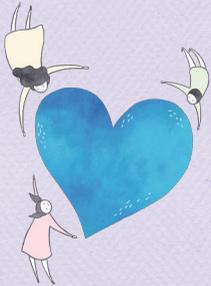
올바로
알고 있어야
바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
성폭력 대응
매뉴얼

올바로
알고 있어야
바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Contents



2014년 12월 인쇄
2014년 12월 발행

편집인 박주영 /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교육연구팀장
이지현 /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교육연구팀원

발행인 윤선영 /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장

발행처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02)735-7510

디자인 환크리에이티브컴퍼니 (02)741-7402

| | | | |
|-----------|-------------------------------|--------------------------|----|
| 01 | 성폭력에 대해 바로 알기 | 성폭력이란? | 05 |
| |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특성 | 05 |
| | |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 06 |
| | | 성폭력 범죄의 처벌 | 08 |
| | | 성폭력에 관한 Q&A | 10 |
| | | 아이들은 기억해야 해요 | 14 |
| 02 | 성폭력 피해 시 신속히 조치하기 | 자녀의 심리적 안정이 최우선 | 17 |
| | | 즉각적인 신고 | 17 |
| | | 증거 보존하기 | 18 |
| | |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찾기 | 18 |
| | | 성폭력 피해에 관한 Q&A | 20 |
| | | 부모님들은 기억해야 해요 | 22 |
| 03 | 학교에서의 성폭력 바르게 조치하기 | 학교폭력과 성폭력 바르게 알기 | 25 |
| | | 학교의 역할 | 26 |
| | | 학교 성폭력 사건처리 시 해바라기센터의 역할 | 27 |
| | | 학교 내 성폭력 피해 조치에 관한 Q&A | 28 |
| | | | |
| 04 | 함께 건강하게 회복하기 | 해바라기센터 | 35 |
| | | 피해자 지원제도 | 39 |
| | | 기타 지원기관 | 42 |
| | | 부록 | 44 |
| | | | |

01

성폭력에 대해
바로 알기

성폭력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피해를 입는지 모르는 범죄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알고, 미리 준비하여 적절하게 대처한다면,
성폭력을 예방하거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합니다.

*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사람은 성행동을 선택할 수 있고,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적 주체로서의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특성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범죄 발생 장소

- 성폭력범죄의 44.0%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며,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33.2%)에서 가장 많이 발생
-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이 청소년에 비해 집, 주택가 및 이면도로, 학교에서 피해를 당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범죄 유형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강제추행이 36.0%로 훨씬 높고,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강간이 83.2%로 높음

범행 발생 시간

- 강간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발생비율(50.2%)이 높고, 강제추행은 오후 시간대(12시~17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출처: '13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범죄 주요 동향/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도래 성폭력

도래 친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행위로 대개 장난처럼 취급되어 성폭력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장난일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행동은 상처를 주는 성폭력이 됩니다.

도래 성폭력의 예

- 음란물(사진, 잡지,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성행동 흉내 내기
- 장난으로 하는 바지 내리기
- 동의 없이 신체 만지기(영덩이, 성기 등)
- 동의 없이 성과 관련된 가슴, 영덩이, 성기 등의 신체부위를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친구들에게 보여주거나 인터넷에 올리기
- (공중)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몰래 훑쳐보기
- 상대방의 외모를 비유해서 성적으로 놀리기
- 게임이나 별칭으로 하는 스킨십 강요하기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공간에서 채팅이나 이메일을 통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장면을 보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현실세계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사이버 성폭력의 예

- 언어 성폭력
성관련 욕설, 아이디 및 명의도용 신상 공개를 통한 성폭력
- 영상 및 음향 성폭력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영상 및 음향 전달 및 게시

친족 성폭력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친족 성폭력은 보통 가해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거주지 내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친족 성폭력이 의심된다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빨리 분리시켜야 합니다.

특히, 강간의 경우 친족을 포함하여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2012년 62.2%에서 2013년 68.8%로 높아졌고, 그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2012년 14.7%에서 2013년에는 17.4%로 증가함.

(출처 : '13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범죄 주요 동향/한국여성정책연구원 참조)

● 성폭력 범죄의 처벌

성폭력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이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됨)

친고죄 전면 폐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가능

강간죄 대상 확대

남성도 강간죄 대상에 포함, 유사강간죄 신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에서 친족 범위 확대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확대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 신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신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 화장실,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몰래카메라 촬영 성범죄

유죄 확정 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자에 대한 법정형에 징역형 추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0조
-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처벌 가능(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 상향

강간의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상세주소 공개 및 '모바일 알리미' 구축 (2014)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는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지역주민 및 교육시설의 장(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및 초·중·고등학교 교장)에게 인근에 사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 요지 등을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성범죄자 신상정보와 함께 성범죄 예방과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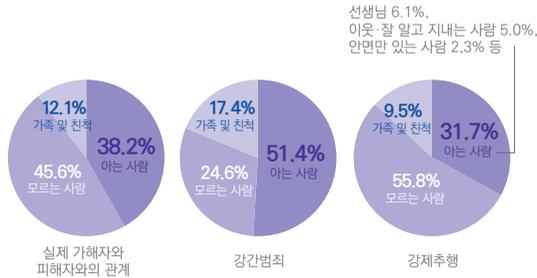
<이용안내>

www.sexoffender.go.kr 접속
안드로이드용 / 아이폰용 앱스토어에서 '성범죄자 알림e' 어플 다운로드 가능

성폭력에 관한 Q&A

Q 성범죄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요?

A 성폭력 가해자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비도덕적인 사람, 낯선 사람, 아이에게 폭력적인 사람,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일 것이라는 가정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즉, 강간 피해자(51.4%)가 강제추행 피해자(31.7%)보다 면식범에게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더 높음

(출처 : '13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범죄 주요 동향/한국여성정책연구원)

Q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A 전체 피해자의 24.5%가 13세 미만의 피해자이며, 범죄유형 중

강제추행범죄는 13세 미만 피해자의 비율이 36.0%로 가장 높습니다.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0년 13.0세, '11년 13.4세, '12년 13.7세, '13년 13.9세로 최근 4년간 점차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출처 : '13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범죄 주요 동향/한국여성정책연구원)

Q 성폭력 피해 후 나타날 수 있는 행동들은 무엇인가요?

A 부모님 및 성인들은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이상 징후에 대해 민감하여야 하며, 평상시와는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되면 조기에 예방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혹은 아래의 행동을 보이는지 유심히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 갑자기 낮에도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 물건 등을 보면 예민해지고 두려워한다.
- 평소보다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과도하게 매달리기도 한다.
- 갑자기 밥을 먹지 않거나, 반대로 밥이나 다른 음식을 과도하게 먹는다.
- 자주 배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고열 등 알 수 없는 감기증상).
- 집중력과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 숙제를 하거나 집중하는데 곤란을 겪는다.
- 과도하게 자위행위를 한다.

- 성기 혹은 항문주위의 상처, 통증, 가려움, 출혈 혹은 냉습 등을 보인다.
- 부적절한 성행동을 보이거나 성문제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나타낸다.
- 성기나 항문에 물건을 삽입한다.
- 인형과 성적행동을 하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성행위를 흉내 낸다.
- 설명이 안되는 감정변화와 우울증상을 보인다.
- 이유 없이 화를 잘 내고 불안해하며, 신경이 예민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한다.
- 친족성폭력 피해아동(친부, 의부에 의한)의 경우, 사위 등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어머니에게 보여주지 않으려 한다.
- 상처부위 등 자기 몸을 피가 나도록 꼬집고 뜯는 등의 자기학대를 한다.

※ 위의 행동이 모두 성폭력 피해의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Q 서울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반 여학생을 추행·강간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경우 가해아동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이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판사는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가해아동에 대하여 「소년법」에 의거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감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검사가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가해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성폭력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법적 보호처분은 아동기의 성폭력 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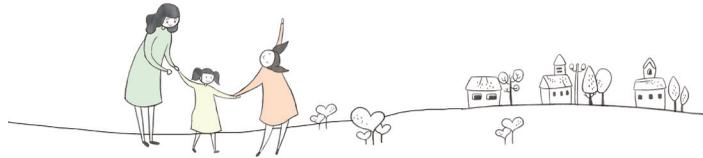
경험이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 가해아동·청소년 교육은 2003년도부터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2013년도부터는 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으로 확대 운영 중임.

• 교육개요

교육대상 : 소년원,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 예방센터, 학교에서 의뢰된 성폭력 가해아동·청소년 및 보호자(부모)

교육내용 : (가해아동·청소년)나의 꿈, 피해자 역할 체험, 분노조절, 스트레스 대처관리(10-40시간 내외) / (부모) 부모와 자녀간 의사소통 훈련, 성폭력 바로 알기, 내 자녀 사건 바로 보기 등(8시간)



성폭력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5계명**

아이들은 기억해야 해요

01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인터넷에서는 무엇을 보았는지 등을
부모님(보호자)과 매일 이야기 나눠요.

02

내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존중하는 습관을 길러요.

03

등·하교는 가능하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밝고 큰 길로 함께 다녀요.

04

부모님(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놀러가지 않도록 해요.
모르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거나 음식이나 선물을 주려고 하면
'부모님께 허락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거절해야 해요.

05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고 나쁜 감정이 있었거나,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부분 등 내 몸을 만져서
불편하게 한 사람이 있었다면 반드시 부모님(보호자)께
이야기해야 해요.



02

성폭력 피해 시 신속히 조치하기



성폭력은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위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부모가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여부에 따라 피해 자녀의 회복 및 가해자의 조치 정도가 달라지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녀의 심리적 안정이 최우선

자녀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부모의 심리적인 안정이 우선입니다. 어렵더라도 자녀 앞에서는 흥분하지 않으며, 침착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자녀의 말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 OK | NO |
|--------------|---------------|
| 안심시키고 이해하는 말 |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말 |
| 우리는 네 편이야 | 왜 그런 곳에 따라갔니? |
| 너의 말을 믿는단다 | 너에게도 문제가 있어 |
| 네 잘못이 아니야 | 조심했어야지 |
| 너를 도와줄게 | 너 때문에 못 살겠다 |

소아정신과 전문의에 의하면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이해 받았던 아동청소년들이 그렇지 못한 아동·청소년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며, 성폭력피해 사실에 대한 부모의 공감 및 지지적 반응은 아동청소년이 충격적인 외상(Trauma)을 극복하고 치료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 즉각적인 신고

가능하면 빨리 112에 신고합니다.

가해자가 아동의 친척·부모·학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신고가 망설여질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 자녀를 보호하고 회복으로 이끌게 됩니다.

● 증거 보존하기

성폭력이 의심되는 증거들을 보존하고, 가해자 식별의 주요 단서가 되는 의학적 근거에 대해 병원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 및 단서가 소멸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신체에 남아있는 성폭력 증거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합니다(손 씻기, 세수, 양치, 질 세척, 샤워는 하지 말고 가능하면 대·소변도 삼가).
- 가해자 식별의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는 증거물들(피해 당시 입었던 겉옷, 속옷, 휴지 등)을 갈아입거나 세탁하지 않도록 합니다. 갈아입었을 경우에는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을 종이봉투에 보관하고, 72시간 내에 경찰관 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합니다.
-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 성범죄 현장은 증거 훼손 방지를 위해 청소 등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찾기

신고가 망설여지는 경우, 부모는 사건을 은폐하거나 임의로 해결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신고가 망설여지거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성폭력상담소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먼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해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복과 치유를 위해 상담, 의학적·

심리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사회적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의 해바라기센터에 전화하시면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전문상담이 가능합니다.

※ 전국 해바라기센터 연락처는 P.37 참조



성폭력 피해에 관한 Q&A

Q 어렸을 때 기억은 크면서 잊어버릴 것 같은데, 그냥 덮어 버리는 것이 낫지 않나요?

A 어렸을 때의 피해일수록 정확한 진단과 전문적인 치료 및 장기적인 관찰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고, 모든 것은 가해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치료와 보살핌 없이 그대로 두면 장기적으로 다양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성 인식 및 행동 등에 관련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Q 피해를 당한 아이는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인가요?

A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성폭력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책감과 수치심 및 자기 비난의 감정이 크고, 부모에게 야단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는 절대 비난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며, 너는 안전하고, 더 이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다'라고 약속하며 자녀를 안심시켜주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이 피해사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 때 보여주는 따뜻한 반응이 피해를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Q 자녀의 친구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자녀가 친구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우선 자녀를 안정시키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폭력은 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폭력 범죄이고, 개인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주는 것이므로, 관련 사실을 함부로 알리거나 피해학생을 놀리지 않아야 한다고 자녀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친구를 보호하고, 지지하고, 공감해주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사실을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자녀에게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비밀 누설 금지** : 누구든지 피해 아동·청소년 및 대상 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3항).

성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는 **5계명**

부모님들은 기억해야 해요

01

항상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고,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아이의 안전을 지켜요.
부모님(보호자)은 아이가 24시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꼭 알고 있어야 해요.

02

아이가 '싫다'고 했을 때 부모님(보호자)은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해요.
그래야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도 '싫다'고 말할 수 있어요.

03

아이와 함께 안전계획을 세워요.
아이가 혼자 다니지 않도록 하고 등·하교길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
(아동안전지킴이집, 주민자치센터, 경찰, 공공기관 등)이 어디에 있는지,
인터넷 이용 시 주의할 점을 미리 알려주세요.

04

모르는 아이에게 음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하지 말아 주세요.
어떤 사람은 관찰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지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요.

05

아이가 상대방에 대해 존중하고 배려하는 습관을 갖도록
생활 속에서 교육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위기에 처한 아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신고해 주세요.



03

학교에서의 성폭력 바르게 조치하기



배움의 터이자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게 되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부모는 사건 발생 시 학교, 전문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 학교폭력과 성폭력 바르게 알기

학교폭력

-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악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유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성폭력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은 위의 학교폭력의 범주에 속하기도 하지만, 성폭력 관련 행위 그 자체로 형법 및 형사특별법상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폭력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의 종류에서 성폭력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학교의 역할

전문기관과의 상담

학생의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는 여성긴급전화 1366, 가까운 해바라기센터 또는 성폭력상담소에 연락하여 문의 및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발생 신고

19세 미만의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신고 의무자인 교직원원이 즉시 수사기관(경찰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제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신고의무기관(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의 종사자가 직무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 부모에게 연락한 후 긴밀히 협력합니다.
- 학교는 성폭력 전문기관(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학생이 필요한 사후 조치를 받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 및 주변 학생, 보호자 지원 등을 위해 교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등 학교의 전문대응팀을 중심으로 협의·대처합니다.
- 학교는 교육청 보고 후 자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성폭력 사안 조사 시 피해학생의 권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피해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보호자, 법정대리인 등)의 동석을 요청해도 됩니다. 또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조사 시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학교 성폭력 사건처리 시 해바라기센터의 역할

신고 및 전화상담 시

-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수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 측에서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바라기센터에 제출하면, 센터에서는 각 관할경찰서 성폭력수사전담팀 또는 여성청소년계로 신고 된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신고서를 인계합니다.
- 학교 측이 학생의 보호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관할교육청, 관할 성폭력수사대, 지자체, 학교,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과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위해 노력합니다.

센터 방문 및 상담 시

- 피해학생이 진술 및 상담에 응하기 어려워하는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피해학생의 경우 왜곡된 성인식이 생기거나 자기 비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권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피해학생의 부모가 당황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을 경우, 사건개입 및 피해자 보호, 법률 자문,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심리평가 결과 불안도가 높을 경우, 학교와 피해학생의 추가 보호조치를 논의합니다.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치료를 거부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필요 시 관련 의료전문가(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자문, 현장 방문, 지역 자원 연계 등을 지원합니다.
- 성폭력 사건을 목격한 학생 및 주변 학생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하고, 조치가 미흡할 경우 학교와 협의합니다.
- 필요한 경우 학교(학급)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 추가 성폭력 피해(다른 피해학생 발생 등)가 의심되는 경우, 학교 및 담당 사건 수사관과 협의합니다.

학교 내 성폭력 피해 조치에 관한 Q&A

Q 성폭력 피해학생이 학교에 요구할 수 있는
보호조치는 무엇인가요?

A 학교에 요구할 수 있는 보호조치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 **가해자 분리**

가장 우선적으로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청

● **심리상담 및 조언**

성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내의 교사 혹은 학교 외의 전문상담기관의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요청

학교에 상담사가 없을 경우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학교 외의 전문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요청

● **일시보호**

지속적인 성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성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정신적 상처의 치료를 위해 일정 기간 출석을 하지 않고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로 집이나 요양기관에서 신체적·심리적 치료를 받을 때에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학교 자치위원회에 제출

● **학급교체**

지속적인 성폭력 상황 및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이동 조치
이 때에는 피해학생이 새로운 학급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피해학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결정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인도,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동행,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법률 구조기관 등에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에 요청

Q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의 선도조치는 무엇인가요?

A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의 선도조치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 차단

● **학교에서의 봉사**

봉사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 마련

● **사회봉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 마련

●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

● **출석정지**

가해학생의 학교 출석을 중단하여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반성의 기회 마련
(이 때,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불포함)

다음의 경우는 즉시 출석정지의 사유가 됩니다.

- ①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성폭력 행사
- ② 성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③ 성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 행사

④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학급교체**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이동

● **전학**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조치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오지 못하도록 조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 **퇴학처분**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가해학생에 대한 퇴학조치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 교육감은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3조 제1항).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입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시행령 제23조 제2항).

● 기타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의 경우 가해자 심리치료 가능.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호자가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법률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통보하여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제22조 제2항).

사례

중학교 도래 학생들에게 집단 성폭행, 학교 소속된 지자체도 손해배상 책임 법원 “가해 측과 함께 3,000만원 배상”

도래 학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성추행을 당한 중학생에게 가해 학생과 그들 부모, 지자체가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법 민사○○부는 중학생 A의 부모가 ○○시와 가해 학생 7명,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시내 한 중학교에 다니는 A는 1학년 때인 20**년 4월부터 9월까지 남학생 7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들 중 2명은 A를 수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 가해학생들은 A의 알몸과 성추행 장면 등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고, 이를 빌미로 계속해서 A를 괴롭혔다. 이 사건으로 가해학생 2명은 소년원에 송치됐고, 나머지 5명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는 우울증과 자해 충동 등 후유증에 시달렸다. A의 부모는 지난해 총 1억 7,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중학생이던 가해학생들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간할 능력이 있었다”며 “이들의 부모들도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했으므로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의 학교 교사들은 피해 사실을 좀 더 빨리 발견해 추가 사고를 막아야 했다”며 “학교가 소속된 지자체인 ○○시도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04

함께 건강하게
회복하기

혼자 감당하기 힘들 때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단순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기관이 함께 한다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 해바라기센터

해바라기센터

해바라기센터는 여성가족부, 지자체, 경찰청, 위탁병원 협약으로 운영됩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사건조사, 법률지원, 의료지원의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로 인한 회복에 소요되는 의료비는 여성가족부가 지원합니다. 필요하다면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심리치료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간병비도 지원합니다.

수사지원

여성경찰관이 24시간 상주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피해 사실 진술 지원
- 진술녹화 :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자일 경우 의무적으로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녹화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위해
경찰서·법원 등을 재차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재판 과정
에 활용

의료지원

- 신체외상진료 및 산부인과 진료
신체 외상의 정도에 따라 수탁병원 진료(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비뇨기과, 향문외과, 소아청소년과) 및 증거채취 실시
-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 시 진단서, 소견서 발급
- 인공임신중절 지원(임신 주수를 고려하여 피해당시 13세 미만 아동은 보호자의 동의하에 신속하게 지원)

심리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 심리평가 및 약물치료, 입원치료
- 심리치료(치료적 성교육, 단기 또는 장기심리치료)

상담지원 및 법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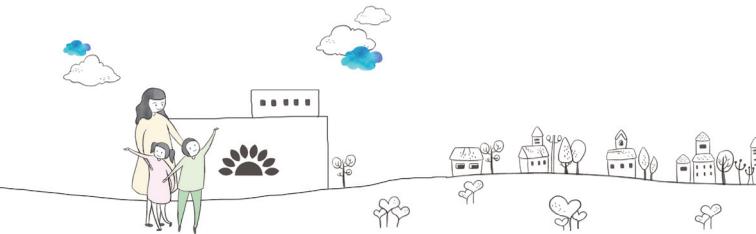
- 사례관리
- 수사·재판지원(신고 동행, 재판지원, 법정 증언 준비교육 등)
- 부모교육 및 상담
- 가족상담
- 지역사회 자원 연계

기타 지원

동행서비스(치료를 위한 동행 이외의 문화, 교육, 수사동행,
기타 귀가동행 지원)

● 전국 해바라기센터 연락처

| 지역 | 센터명 | 위탁병원 | 연락처 | 기능 |
|----|----------------|------------------|------------------------------|--------|
| 서울 |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 경찰병원 | 02-3400-1700 | 위기지원 |
| |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 보라매병원 | 02-870-1700 | 위기지원 |
| | 서울해바라기센터 | 서울대병원 | 02-3672-0365 | 통합 |
| |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 연세의료원 | 02-3274-1375 | 아동·청소년 |
| 부산 |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 | 부산의료원 | 051-501-9117 | 위기지원 |
| | 부산서부해바라기센터 | 동아대병원 | 051-244-1375 051-805-0117 | 통합 |
| 대구 | 대구해바라기센터 | 대구의료원 | 053-556-8117 | 위기지원 |
| |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 | 경북대병원 | 053-421-1375 | 아동·청소년 |
| 인천 |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 | 인천의료원 | 032-582-1170 | 위기지원 |
| | 인천북부해바라기센터 |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032-280-5678 | 위기지원 |
| | 인천해바라기센터(아동) | 가천대길병원 | 032-423-1375 | 아동·청소년 |
| 광주 | 광주해바라기센터 | 조선대병원 | 062-225-3117 | 위기지원 |
| | 광주해바라기센터(아동) | 전남대병원 | 062-232-1375 | 아동·청소년 |
| 대전 | 대전해바라기센터 | 충남대병원 | 042-280-8436 | 통합 |
| 울산 | 울산해바라기센터 | 울산병원 | 052-265-1375 | 통합 |
| 경기 |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 | 의정부의료원 | 031-874-3117 | 위기지원 |
| |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 | 한도병원 | 031-364-8117 | 위기지원 |
| |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 | 아주대병원 | 031-215-1117 | 통합/거점 |
| |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 명지병원 | 031-816-1375 | 통합 |
| | 경기해바라기센터(아동) | 분당차병원 | 031-708-1375 | 아동·청소년 |



| 지역 | 센터명 | 위탁병원 | 연락처 | 기능 |
|----|--------------|-------------|------------------------------|--------|
| 강원 |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 강원대병원 | 033-252-1375 033-243-8117 | 통합 |
| | 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 | 강릉동인병원 | 033-652-9843 | 통합 |
| 충북 | 충북해바라기센터 | 청주의료원 | 043-272-7117 | 위기지원 |
| | 충북해바라기센터(아동) | 건국대 충주병원 | 043-857-1375 | 아동·청소년 |
| 충남 | 충남해바라기센터 | 단국대병원 | 041-567-7117 | 위기지원 |
| 전북 | 전북해바라기센터 | 전북대병원 | 063-278-0117 | 위기지원 |
| | 전북해바라기센터(아동) | 전북대병원 | 063-246-1375 | 아동·청소년 |
| 전남 | 전남동부해바라기센터 | 성가톨릭병원 | 061-727-0117 | 위기지원 |
| |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 | 목포중앙병원 | 061-285-1172 061-285-1375 | 통합 |
| 경북 | 경북북부해바라기센터 | 안동의료원 | 054-843-1117 | 위기지원 |
| |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 | 선린병원 | 054-245-5933 054-245-5949 | 통합 |
| 경남 | 경남해바라기센터 | 마산의료원 | 055-245-8117 | 위기지원 |
| | 경남해바라기센터(아동) | 경상대병원 | 055-754-1375 | 아동·청소년 |
| 제주 | 제주해바라기센터 | 한라병원 | 064-749-5117 | 통합 |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기관의 명칭이 '해바라기센터'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 피해자 지원제도

피해자 국선번호인 제도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지원내용 | 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검사가 지정한 국선번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수사기관에 성폭력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 국선번호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진술조력인 제도

지원대상 | 13세 미만 아동,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진술조력인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신청합니다.

무료법률구조 제도

지원대상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거나, 법률정보가 부족하여 법적 대응이 어려운 피해자들의 인권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법률상담·소송서류 작성 및 소송대리·형사사건 무료변호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www.legalaid.or.kr)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4, www.rape119.or.kr)

간병비 지원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성폭력피해자 중 가족의 간병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병원 간병비 자부담 비용

지원기간 | 최대 1개월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0만원

신청문의 |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관할 시군구

돌봄비용 지원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자의 13세 미만 자녀

지원내용 | 돌봄서비스 이용 시(민간베이비시터, 아이돌봄서비스 등) 자부담 비용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원칙(연장 12개월 포함 최대 18개월까지 가능)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백만원 한도 원칙(연장 6백만원 포함 최대 9백만원까지 가능)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여성가족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에서 국민임대주택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 적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지원대상 | ① 친족관계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②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지원자격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했거나, 아동청소년 전용쉼터에 1년 이상 입소 또는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 LH 분양 · 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범죄 피해자 지원

생계비 등 | 범죄피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긴급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합니다.

직업훈련비 | 범죄 피해자의 구직을 돕기 위한 훈련비 및 부대비용 지원

부대비용 | 의료보조기구, 원거리 치료 시설 이용 시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지원

신청기관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신청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국번 없이 1301

● 기타 지원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긴급전화상담, 전화통화에 의한 초기상담, 긴급보호를 실시하며, 전문상담기관, 보호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검·경찰, 행정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원스톱 보호망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심리치료·임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기관으로, 의료기관 및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가해자에 대한 고발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가해자와 같은 거주지 또는 이웃에 살고 있어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피해자들의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과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일반 쉼터, 장애인 쉼터, 특별지원(친족피해청소년) 쉼터,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로 구분됩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www.wesay.or.kr

청소년 스스로가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고, 성문화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추어 건강한 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성교육관련 프로그램, 성폭력 상담, 청소년활동(동아리, 캠프, 거리상담 등) 등을 지원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www.korea1391.org

학대(신체, 정서, 성, 유기, 방임)받은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쉼터보호, 심리치료, 의료·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전화 112

스마일센터 www.resmile.or.kr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게 정신과 진료,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상담, 법률지원, 임시주거시설,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법무부 범죄피해자 전문심리지원 기관입니다.



부록

행위 유형별 성폭력 구분

| | |
|--------------|--|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시키는 행위 |
| 유사강간 |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
| 준강간 |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한 행위 |
| 강제추행 | 폭행이나 협박으로 가슴, 엉덩이, 성기부위 접촉, 키스, 음란한 행위, 피해자나 가해자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가지게 하는 행위 |
| 준강제추행 |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행위 |
| 성희롱 | 업무 또는 고용관계 및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 스토킹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행위 |
|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이나 성적 언어로 모욕감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
| 사이버 성폭력 | 온라인 상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치 않는 성적 대화나 메시지를 전달하여 불쾌감, 위협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방식에 따른 성폭력 범죄의 유형¹⁾

| 성폭력 범죄의 유형 | 성립 요건(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방식) |
|---|---|
| <p>강간(형법 297조) 유사강간(형법 297조의2) 강제추행(형법 298조)</p> | <p>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 유사성고, 추행하는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기서 폭행, 협박은 상대방이 반항할 수 없거나, 곤란할 정도의 물리력 행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때론만 아니라 완력 이용 또는 기습적으로 하는 경우도 범죄에 해당한다. * 흉기를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면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으로 가중처벌이 되지만 이러한 경우에만 성폭력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아동·청소년, 장애인, 친족간에 대한 강간, 추행 범죄는 가중처벌이 된다. |
| <p>준강간(형법 299조) 준강제추행(형법 299조)</p> | <p>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지 않고 술이나 약물, 깊은 잠에 빠져 이미 저항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 추행하는 것</p> |
| <p>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형법 302조, 30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조5항, 7조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조5항)</p> | <p>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장애인, 업무상 피감독자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상대방에게 착각, 오인, 부지를 일으켜 범행(위계)하거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위력)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처벌한다. |

1)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여성가족부, 한국기자협회,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2014) 참조

성폭력 범죄의 유형

성립 요건(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방식)

미성년자의제기간/추행
(형법 30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

* 폭행, 협박, 위계, 위력 유무를 불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행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성행위 합의'에 대한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보아, 강간, 강제추행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하여 처벌한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 장소 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 들어가거나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하는 것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사진,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 | |
|--------|----------|
| 발간등록번호 | 중앙2014-7 |
| 매뉴얼 | 2014-5 |

도움을 주신 분들
- 감수(성명 가나다순)

| | |
|----------|-------------------|
| 강은영 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곽희영 회장 | 미성년자성폭력피해부모들의 사랑방 |
| 박혜영 부소장 | 서울해바라기센터 |
| 송유경 대표 | 꿈을 찾는 나비 |
| 우경희 부소장 |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
| 최은하 부소장 | 경남해바라기센터 |